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3. 4. 30.(화) 10:00~

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 거창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4. 10.

나. 제출자 : 조선제 · 조기원 · 이애숙 · 이성복 · 김재권 · 강창남 ·
백범영 · 안철우 · 강철우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3. 4.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4.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2)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제5조)
- (3)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4)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5)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자주적인 위생관리,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제10조)

- (6)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사업자의 정보공개촉진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제12조)
- (7) 농가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이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 나.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거창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 4.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3. 4. 1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4.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거창군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거창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보장,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1) 용어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 (2)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
(안 제5조 ~ 14조)
 - 거창푸드산업육성계획수립, 푸드 인증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3) 거창푸드 인증기준을 정함 (안 제15조 ~ 제22조)
 - 품질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수립시행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및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
- (4) 거창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관하여 정함(안 제23조~제27조)

- 생산 : 소량 다품목 방식 등으로 지역 농업인에 참여
 - 가공 : 같은 업종의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
 - 유통 : 같은 업종의 생산자 및 가공자가 공동으로 참여
 - 소비 : 학교급식, 청소년시설,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우선
 - 거창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5) 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28조~30조)
- (6) 거창푸드 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정함(안 제31조~제3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이 조례안은 우리군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창푸드 산업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 나.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